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084호**2026년도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 게시 가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선행사업*을 통해 도출된 제약사항의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임무수요기반의 실증기,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고고도 무인기 분야 국내외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혁신도전형)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사업

- (2단계 사업기간/예산*) `26.11. ~ `30.12. / 총 371.25억원(`26년 65억원)

* 정부출연금 기준

- (사업내용) 공공임무용 성층권 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성층권 드론 특화 임무장비 개발, 임무 실증기 고도화 및 동력원 국산화

- (수행주체) 대학, 출연(연), 산업체 등

※ 상세 지원 자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지원 내용

○ (선정규모) 4개 과제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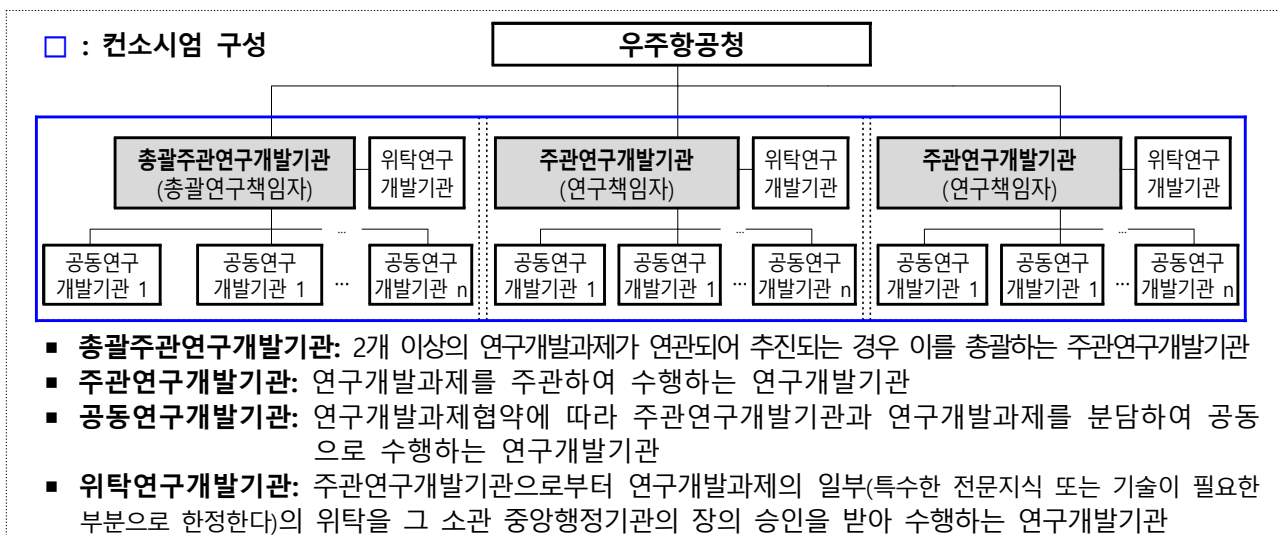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과제명	2단계 연구기간 (‘26년 연구기간)	2단계 출연금 (‘26년 출연금)	선정 과제수	비고
임무수요 기반 성충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총괄) 임무수요기반 성충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26.11.~’30.12. (‘26.11.~’26.12.)	100 (20)	1	상세내용 붙임 RFP 참조
	(1세부) 공공임무용 성충권 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26.11.~’30.12. (‘26.11.~’26.12.)	20,650 (2,980)	1	
	(2세부) 성충권 드론 특화 임무 장비 개발	‘26.11.~’30.12. (‘26.11.~’26.12.)	5,375 (500)	1	
	(3세부) 성충권 드론 동력원 핵심 부품 국산화	‘26.11.~’30.12. (‘26.11.~’26.12.)	2,500 (1,500)	1	
	(4세부) 성충권 드론 체계종합 및 실증 지원	‘26.11.~’30.12. (‘26.11.~’26.12.)	8,500 (1,500)	-	정책지정
합 계			37,125 (6,500)	4	-

- ※ 본 과제의 선정평가를 통해 1순위로 결정된 기관 및 4세부(정책지정)는 1단계 과제의 성공 확정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협약체결 예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1단계 과제 최종 성공 판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2단계 연구 개발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어 협약을 체결함
- ※ 4세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지정(선행 연구결과의 활용·지원 역할)
- ※ 민간부담금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함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
-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 본 사업의 정산업무는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법인 위탁 수행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여야 함

3. 사업수행체계 및 신청자격, 신청제한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통합형 추진체계



※ 본 과제는 총괄·1·2·3세부 통합 컨소시엄으로 지원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외기관 참여 시,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사전 협의

- 기타 개별법 및 특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지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사업별 RFP 참고)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제한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공', 그 외 참여연구원은 '공'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협약해약) 사유에 해당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 선정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 **(지원제외)**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저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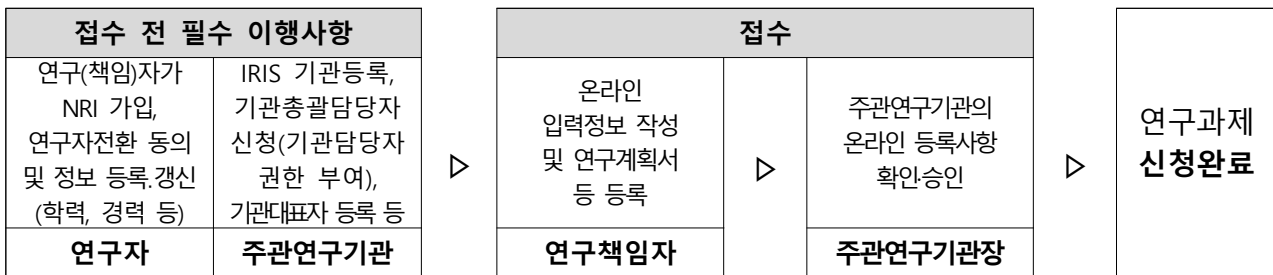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2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 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HWP)
- 기타증빙 각 1부(PDF)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첨부3. 협약체결 특수조건 동의서
	선택제출 서류	첨부4. (해당 시)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5.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첨부6.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첨부7.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협약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선택제출 서류	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
		5.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 <http://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21~25)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 제안서 보완요구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연구관리 목적 사용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우주항공청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100페이지 이내 작성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공고 기간	2026. 7. 10.(금) ~ 8. 31.(월) 18:00까지
접수 기간	2026. 8. 3.(월) ~ 8. 31.(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 및 검토·승인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 가능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최초 공고일('26. 7. 10.)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6. 선정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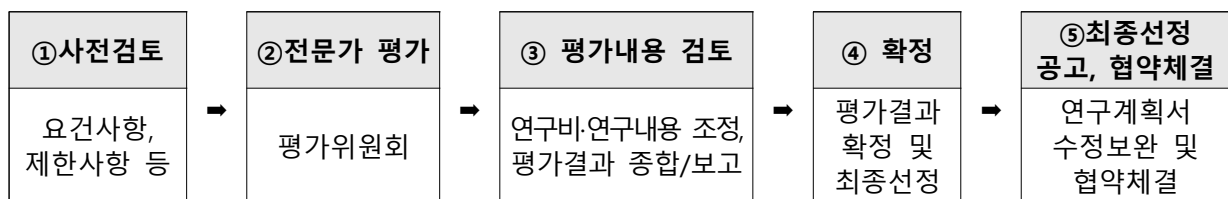
○ 평가 기본방향

-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 체결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

○ 평가 방법: 대면 발표평가

- '26. 9월 중 평가 실시(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세부 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이며, 평가일정 변동 가능)

○ 평가 절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③ 평가내용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복수 응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단독 응모)**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④ 우주항공청 확정

-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 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 과제를 최종 확정

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	○ 과제제안요구서 연구주제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 ○ 연구계획의 타당성(합리성) 및 우수성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40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성과물의 미래선도 항공시스템 활용 가능성 ○ 연구수행을 통한 관련기술의 TRL 향상 가능성	30
연구역량, 연구자, 연구기관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의 선행 연구 성과 및 전문성 ※ 논문 편수, Impact factor보다 보유기술의 질적 우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 연구자 및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20
연구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수행 체계 및 전략의 구체성·타당성	10
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연구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40점)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30점) → 연구역량, 연구자, 연구기관의 우수성(20점) → 연구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7.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 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

<참고>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6.1.1.~'26.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1억원 미만	987천원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table><tr><th>공동연구 기관수</th><th>가산금</th></tr><tr><td>0개</td><td>없음</td></tr><tr><td>1개</td><td>표준수수료의 10%</td></tr><tr><td>2개 이상</td><td>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td></tr></table>	공동연구 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
공동연구 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천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천원	○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table><tr><th>연구 개발기간</th><th>가산금</th></tr><tr><td>1년 이하</td><td>없음</td></tr><tr><td>1년 초과</td><td>표준수수료매 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td></tr></table>	연구 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없음	1년 초과	표준수수료매 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		
연구 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없음									
1년 초과	표준수수료매 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									
30억원 이상	2,043천원									

- (협약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계획서 첨부 양식)
 -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본 사업(과제)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및 관리함

- 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http://gaia.go.kr>)

- 4세부는 항우연 정책지정(선행 연구결과의 활용·지원 역할)
- 본 과제는 총괄·1·2·3세부 통합 컨소시엄으로 지원하여야 함
- 4세부를 포함하는 총괄 연구계획서는 과제 공모 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 협약 체결 단계에서 세부과제 간 연계·관리·운영 계획을 포함한 연구 계획서로 별도 제출

○ (특수조건)

가. 본 공고 및 선정평가 절차는 1단계 장기체공 재시험비행의 성공 확정을 전제로 2단계 과제 착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본 선정평가 결과 1순위로 결정된 기관은 1단계 성공 확정* 시 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부 협약체결 예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1단계 성공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은 해당 기관을 2단계 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확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장기체공 재시험비행(‘26.3.~10.) 과제 점검 결과에 따른 성공 확정 판정 시

나. 1단계 사업이 실패한 경우 조건부 협약체결 예정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도 2단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협약체결 청구권, 연구개발비 지급청구권 또는 신청·중비비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특수조건은 본 과제 신청의 필수조건이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명의의 ‘협약체결 특수조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중견기업인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 중소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6. 7. 10.(금) ~ 8. 31.(월)	연구개발계획서 공고 및 접수(신청 마감일)
2026. 9월 중	평가 실시(대면 발표평가)
2026. 10월 중	조건부 협약체결 예정기관 선정
2026. 11월 초	협약 체결(1단계 사업의 성공이 확정된 경우)

※ 평가 및 선정, 협약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9. 문 의 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 공고문, FAQ 등 확인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2차) 주관연구개발기관 → 우주항공청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우주항공청 (<https://www.kasa.go.kr>) → 알림 → 사업공고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과제제안요구서 등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사업관리시스템(IRIS)
문의처	미래항공기프로그램 (☎ 055-856-5452) cih1104@korea.kr	임무지원단 (☎ 055-856-5016) kasarnd@korea.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대표 이메일 : kasarnd@korea.kr

- 별첨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양식)
3. 기타증빙(양식)